



1회용품 정의

자원재활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회용품이란?

자원재활용법 제2조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1회용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회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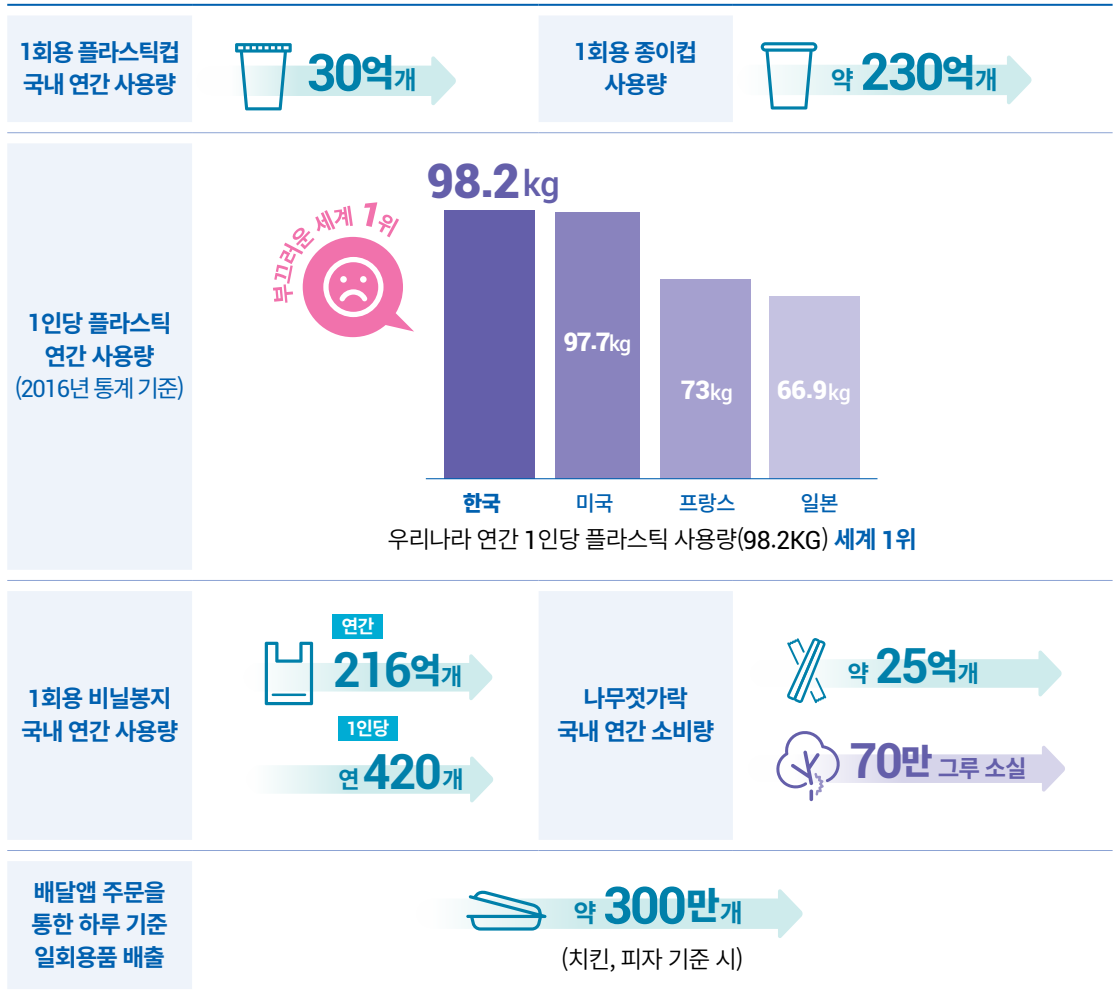
1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 제외)
4	1회용 수저·포크·ナイ프
5	1회용 광고선전물
6	1회용 면도기·칫솔
7	1회용 치약·샴푸·린스
8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 장관 고시 품목은 제외)
9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1회용품 사용의 문제점

연간 1회용품 사용량?



어떤 문제가 생길까?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자원이 낭비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발명된 지 200년,
 그러나 플라스틱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 500년.
 처음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아직도 분해되지 않았습니다.

무분별하게 사용된 1회용품과 이로 인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작은 입자로 쪼개지고 미세플라스틱들은 해양 생물들의 체내에 축적되어 결국 어류, 어패류, 천연 소금 등을 섭취하면서 인간의 몸에도 축적되게 됩니다.





현재 1회용품 규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표 2]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소	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사용억제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 등)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제작 배포 억제 등 사용 억제
	바. 1회용 비닐 식탁보	
	사.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목욕장업	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만 해당)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예외 ※다른 제품에 물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 보관 필요한 제품 담기위한 합성수지봉투 예외	무상제공금지
	가. 1회용 면도기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및 가공업, 즉석 판매 제조 및 가공업	가. 1회용 용기(합성수지)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예외	사용억제
체육시설	가.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대규모 점포, 도매 및 소매업 (매장면적 33㎡이 상)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예외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 하는 냉장보관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봉투 예외	무상제공금지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은 사용억제) ※표준 산업분류 상 슈퍼마켓은 매장 면적 165㎡ 이상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 배포 억제 등 사용 억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환경부에서 ‘대체 가능한 1회용품 사용 제로화’를 목표로 2019년 11월 22일 발표.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이상 줄일 계획으로 1회용품 줄이기 대상의 단계적 확대 진행

• 일회용 컵

대상	현행	2021년	2022년	2030년
합성수지 컵	(사용금지) 커피점, 집단급식소 등 모든 식품접객업	(무상제공금지) 먹다남은 음료 테이크아웃 컵에 담아 받을 경우	테이크아웃 컵 보증금제 도입	
종이 컵	사용가능	(사용금지) 커피점, 집단급식소 등 모든 식품접객업		



※ 컵 보증금제란?

1회용컵에 일정금액을 부과하여 시민이 음료 등을 구입 시 함께 지불하고 컵을 반납할 시 해당 금액을 환불해줌으로써 컵 반환을 촉진하고 근본적으로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

• 비닐봉투·쇼핑백





대상	현행	2021년	2022년	2030년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대규모점포 (백화점, 쇼핑몰 등) 슈퍼마켓 (165㎡이상) (무상제공금지) 제과점, 도·소매업		(사용금지) 종합소매업, 제과점 (무상제공금지) 음식점, 주점업	(사용금지) 모든 업종 ※불가피한 경우 예외 허용



• 배달음식

대상	현행	2021년	2022년	2030년
식기류 (수저·포크·ナイ프)	사용가능 (배달 시)	(사용금지) ※불가피한 경우 유상 제공		
용기·접시류	사용가능 (배달 시)	종이 등 친환경소재 대체 유도		종류별 재질 단일화 또는 다회용기 사용

• 기타

대상	규제 확대 내용
 빨대 및 젓는 막대	플라스틱 소재의 빨대나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사용 금지
 우산비닐	대규모 점포 2022년부터 사용 금지
 위생용품 (면도기·샴푸·린스·칫솔 등)	- 현재 목욕장업 대상 무상제공금지 적용 중 -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 2024년부터 전 숙박업에 확대 적용
 장례식장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2021년부터 컵, 식기부터 사용 금지 (단계적 확대)

위 내용은 환경부의 계획이지만 아직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되지는 않았으므로 단순 참고사항으로 활용하되, 구체적으로 규제 내용이 변경될 시 사전 계도 기간 운영 후 점검 진행할 예정



1회용품을 줄이는 우리의 노력

1회용품 out!을 위해 이렇게 함께 동참해주세요.

어떻게? **하나.** 1회용 비닐통투나 쇼핑백 대신 장바구니를 이용해주세요!

둘. 커피전문점 이용 시 머그잔이나 개인 텀블러를 이용해주세요!*

* 텀블러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

상호명	할인 혜택	상호명	할인 혜택	상호명	할인 혜택	상호명	할인 혜택
엔제리너스 커피	400원	빽다방	100원	크리스피 크림 도넛	400원	이디야 커피	100원
커피베이	200원	베스킨라빈스	100원	던킨도너츠	100원	폴바셋	500원
롯데리아	200원	스타벅스	300원	카페베네	300원	커피빈	300원
파스쿠찌	300원	할리스 커피	300원	탐앤탐스	300원	투썸 플레이스	300원

※타 제휴할인과 중복할인, 일부 특수매장 적용 여부 등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 여행갈 때는 개인 위생용품(면도기, 세면용품 등)을 잊지말고 챙겨주세요!

넷. 배달 음식 주문할 때는 나무젓가락과 1회용 수저를 받지 말아주세요!

다섯.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에 동참하고 있는 사업장의 규제 준수에 협조해주세요.

규제 준수에 수반되는 애로사항은 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모습,

이제는 특별함이 아닌 우리 모두의 기본 상식이 되었습니다.

1회용품을 줄이는 우리의 노력

1회용품 out!을 위해 이렇게 함께 동참해주세요.

미추홀구에서는?

미추홀구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자원순환사회의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진행
2. 공공기관 내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 준수 실천 노력
3.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진행



2019. 8. 7.(수) 인하 문화의 거리에서 진행된 1회용품 Freeday 캠페인을 통하여 인하대학교 학생들과 지역주민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사업장 방문홍보 및 1회용품 대체물품 배부

지역사회 모두가 1회용품 사용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공유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착한 소비문화 조성과 이로 인한 자원순환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미추홀구는 주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Q & A

Q 사용억제가 사용금지인가요?

A 자원재활용법 제41 조(과태료)에서는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라고 명시하여 사용억제가 곧 사용금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Q 1회용품 규제 위반 신고 제도는 운영되나요?

A 신고 및 제보를 통한 현장 점검 대상 선정은 가능하나, 위반사항 단속은 종합적인 현장상황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단순 제보만으로 매장에 과태료 처분은 어려우며, 신고에 따른 별도의 포상금 지급 제도 또한 미추홀구에서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Q 1회용컵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A 현행 법상 매장 외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인 경우에만 제공 가능하며 단순히 소비자가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의 예외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후 매장 내에서 1회용컵으로 음용하는 경우 다수 발생하여 많은 사업장에서 곤란을 겪고 있으니, 매장 내 음용할 경우는 머그잔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하여 영업하는 업체 모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대상인가요?

A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입점방식(직영·임대·판촉·수수료 등)이나 면적과 관계없이 규제대상이 되어 사용이 금지됩니다.

Q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A 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표지인증(EL724)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만든 봉투나 쇼핑백
 - B5규격(182mm * 257mm) 또는 0.5ℓ(500cm³)이하의 비닐 봉투나 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나 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Q 비닐봉투 규제에서 제외되는 수분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속비닐)의 기준은?

A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등) 및 핏물이 흐르는 정육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들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나 단순한 온도의 차이로 인해 수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속비닐 사용이 불가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품 배출 안내: 매주 화/목 19:00 ~ 24:00 투명 비닐에 담아 문전 배출

•종이류



골판지(박스)류

테이프, 스티커 등 제거 후 접어서 끈으로 묶어서 별도배출,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백판지 / 신문 /
책 / 광고지**

비닐, 스프링 등 이물질 제거 후 끈으로 묶어서 별도 배출합니다.



종이컵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한데 모아서 배출합니다.



종이팩(우유팩)

물로 헹군 후 말려서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별도 배출하거나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화장지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

 200ml x **100** 개

 500ml x **55** 개

 1000ml x **35** 개



**화장지 1롤
교환**



**재활용불가
품목**

- 코팅 종이: 손으로 찢어지지 않거나, 찢었는데 코팅된 비닐이 보이는 인쇄물
- 택배전표, 감열지(영수증), 은박지, 금박지, 벽지 등 혼합 재질, 부직포
- 오염된 종이, 음식물 잔재가 묻어있는 컵라면 용기
- 내부에 알루미늄박이 붙어 있는 종이팩

➔ 일반 종량제 봉투



Q & A

Q 키친타올, 휴지는 재활용 되나요?

A 깨끗한 상태는 가능하지만, 오염 가능성이 크므로 일반쓰레기로 배출합니다.

Q 스프링 등이 부착된 책자는 어떻게 배출하나요?

A 다른 재질은 제거 후 종이류로 배출합니다.

Q 파쇄지(세절지)는 재활용 되나요?

A 일반적으로 안되지만 미추홀구에서는 재활용 처리 가능합니다.
밀봉 후 배출바랍니다.

TIP 종이류와 종이팩은 다릅니다.

종이류는 새 종이로, 종이팩은 화장지, 미용티슈와 같은 다른 제품으로 재활용합니다.

• 캔·고철류



철캔/알루미늄캔

물로 헹군 후 다른 재질 제거 후 배출합니다.



부탄가스/ 스프레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송곳으로 구멍을 낸 후 배출합니다.



고철류

공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등



페인트통

PP마대



재활용불가 품목

- 고무, 플라스틱이 부착된 제품: 일반 종량제 봉투
- 가위, 송곳 등: 다른 재질을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일반 종량제 봉투
- 알루미늄 호일: 일반 종량제 봉투

Q & A

Q 우산은 어떻게 버리나요?

A 재질별로 분리해서 철은 고철로 나머지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재질별로 분리가 어렵다면 일반종량제 봉투에 분리하여 배출합니다.

Q 세탁소 옷걸이는 재활용되나요?

A 다른 재질과 섞여있지만 고철로 재활용 가능합니다.



• 유리병류



비용기보증금
라벨이 있는 병

소매점에서 환급 가능합니다.



비용기보증금
라벨이 없는 병
(잡병)

물로 행군 후 깨지지 않도록 하여 배출합니다.
※ 잡병 일정량 이상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로 수거해갑니다.



유리제품
(유리잔 / 맥주컵 /
소주잔 등)

별로 모아서 배출합니다.



재활용불가
품목

판유리, 거울, 전구, 식기류, 유리뚜껑, 기름병, 크리스탈제품
➡ 가연성은 황색봉투 배출, 크기가 큰 것은 대형폐기물로 배출합니다.
도자기류, 내열유리(전자레인지나 가스레인지 유리 용기)
➡ 불연성은 PP마대로 배출합니다.

TIP

TIP

- 유리병은 다른 재활용품과 섞이면 수거 시 깨질 우려가 있으니 따로 담아서 배출해주세요.
- 깨진 유리는 종이 등으로 싸서 일반중량제 봉투로 배출해주세요. 양이 많으면 PP마대로 배출해주세요

• 플라스틱류·페트병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은 제거하여 배출합니다.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합니다.



페트병

뚜껑 제거 후 물로 헹귀서 배출합니다.



펌핑식 용기

삼푸, 세제 등 펌핑식 용기는 펌프를 분리해서 배출합니다.



플라스틱 반찬 용기

플라스틱류로 배출합니다.



재활용불가 품목

- 플라스틱 그릇: 항색봉투로 배출
- 고무대야: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 화분: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 장난감, 완구: 여러 재질이 섞인 것은 재활용 불가
예) 건전지 들어가는 장난감은 안 됨.
- 페토너: 전문수거업체 또는 일반종량제 봉투
- CD/DVD: 일반 종량제 봉투
- CD/DVD 케이스: 일반 종량제 봉투
- PVC류, 고무류, 호스류, 양파망, 공, 스폰지, 칫솔, 파일철, 낚시대, 알약포장재: 일반 종량제 봉투
- 매트, 테니스 / 배드민턴 라켓, 텐트: 대형폐기물로 배출

Q & A

Q

어떤 장난감이 재활용 되나요?

A

블록 등 단일재질은 재활용 가능합니다.
건전지가 들어가는 제품이나 다른 재질이 섞인 제품은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TIP

주방그릇은 재활용 안되지만, 반찬 용기류는 가능합니다.



• 비닐류

과자·라면·빵 봉지 등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 봉투 등
뽁뽁이(에어캡)는 펴서 배출하면 재활용 가능합니다.



**재활용불가
품목**

스티커,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합니다.
랩: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합니다.

• 스티로폼



순백색 스티로폼

이물질(테이프, 송장) 제거 후 묶어서 배출합니다.
가전제품 포장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제품 구입처로 반납하며, 반납 어려울 시 재활
용으로 배출합니다.



**재활용불가
품목**

이물질 묻은 스티로폼, 압축스티로폼(일반 스티로폼에 비해 단단함), 색깔 있는 스티
로폼, 주택 개보수 시 배출되는 스티로폼, 건축용 자재로 쓰인 내연재, 공작용 우드락
재질, 컵라면 용기 등 음식물로 오염된 스티로폼, 과일포장용 스티로폼, 순대, 만두 등
1회용 용기 스티로폼
➔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합니다.

Q & A

Q

스티로폼 조각은 어떻게 버리나요?

A

재활용 가능한 스티로폼이라면 투명 비닐에 밀봉하여 배출하며, 그 외 스티로폼은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합니다.

TIP

순대, 만두 등 음식물 포장용 1회용 용기 스티로폼:
재활용마크가 있더라도 미추홀구에서는 재활용처리가 안됩니다.

스티로폼에 부착된 테이프 등 이물질은 모두 제거하고 묶을 때도 테이프 대신
노끈 등을 사용해주세요.

• 폐형광등·폐건전지

폐형광등


폐형광등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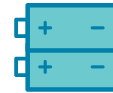
폐건전지

폐건전지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공시설에 다수 배치).

※ 폐건전지 교환사업:

행정복지센터에 폐건전지 30개를 모아오시면 새 건전지 2개를 드립니다!

 폐건전지 x 30 개



새 건전지 2개 교환

• 폐가전제품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이용방법



인터넷/ 모바일: www.15990903.or.kr



콜센터: 1599-0903

운영시간



콜센터: 평일 08:00 - 18:00



수거차량: 평일 및 공휴일 08:00 - 18:00

수거 품목

분류	품목	세부품목
단일수거 가능품목	1) 냉장고	1)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2) 세탁기	2)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탈수기 등
	3) 에어컨	3)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4) TV	4) CRT/LCD/LED/프로젝션
전기오븐, 자판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정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분리배출 품목 사전

7	품목	배출방법
	가발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가방	가죽,천 소재는 의류수거함, 그 외는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가위	여러재질이 섞인 경우,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거울	작은 것은 황색봉투로 배출, 큰 것은 대형폐기물로 배출
	건전지	건전지 수거함,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로 배출
	걸레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계란껍질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고무장갑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고무통	대형폐기물로 배출
	골판지	종이류로 배출
	골프 클럽 백	대형폐기물로 배출
	골프공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공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공구류	고철. 단, 여러재질이 섞인 경우,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광고전단지	종이류로 배출, 단, 코팅된 종이는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국자(금속, 비금속)	고철로 배출
	국자(나무)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국자(플라스틱)	플라스틱으로 배출
	굴껍질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그릇(금속, 비금속)	고철로 배출
	그릇(도자기)	PP마대로 배출
	그릇(유리)	황색봉투로 배출
	그릇(플라스틱)	황색봉투로 배출
	기름(식용)	신문지로 적셔서 일반종량제 봉투로 배출
	기저귀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기타(악기)	대형폐기물로 배출
	깨진 유리	수거원이 다치지 않게 싸서 황색봉투로 배출



L	품목	배출방법
	나무젓가락	일반 종량제봉투로 배출
	나무조각 / 나뭇가지 / 나무줄기	일반 종량제봉투로 배출
	나사(못)	모아서 고철로 배출
	나침반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낙엽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낫	고철, 단, 여러재질이 섞인 경우,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내열식기류	PP마대로 배출
	냄비뚜껑(강화유리)	PP마대로 배출
	노끈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노트북	동행정복지센터 무료수거함으로 배출

C	품목	배출방법
	다리미	동행정복지센터 무료수거함으로 배출
	담요	의류수거함으로 배출
	도끼	고철, 단, 여러재질이 섞인 경우,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도마(나무)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도마(플라스틱)	플라스틱으로 배출
	도자기류	PP마대로 배출
	돋보기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뚝배기	PP마대로 배출



ㄹ	품목	배출방법
	라이터(1회용)	모두 사용한 후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라켓 (배드민턴/테니스 등)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랩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리코더(플라스틱)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	품목	배출방법
	마대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마스크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마요네즈용기	행군 후 플라스틱으로 배출
	마우스패드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마커펜 / 만년필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맥주병뚜껑 (철 / 알루미늄)	고철로 배출
	머그컵(도자기류)	PP마대로 배출
	머플러(목도리)	의류수거함으로 배출
	면도기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면봉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명함	종이류로 배출, 단, 코팅 등 다른 재질 포함 시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명함지갑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모기장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모자	가죽,천 소재는 의류수거함, 그 외는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목재	황색봉투로 배출
	못	모아서 고철로 배출
	물티슈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밀짚모자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ㅂ	품목	배출방법
	바둑판	작은 것은 일반 종량제 봉투, 큰 것은 대형폐기물로 배출
	방석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배트민턴공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백과사전	종이류로 배출
	백열전구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베개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벼루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벽돌	PP마대로 배출
	보온병	고철로 배출
	볼펜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볼풀공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크기가 작아 선별이 어려움)
	부직포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분무기(플라스틱)	플라스틱으로 배출
	분유 강통	고철로 배출
	붓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비닐봉지(1회용)	비닐로 배출
	비닐코팅종이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비디오테이프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빗	재질에 맞게 배출하되 나무 빗 등은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빨대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크기가 작아 선별이 어려움)
	뽕뚱어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뽕뽕이(에어캡)	비닐로 배출, 룰에 말려있으면 일반종량제 봉투로 배출

ㅅ	품목	배출방법
	사인펜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사전	종이류로 배출
	사진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사진인화지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삽	황색봉투로 배출
샤프펜슬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샴푸용기	헝군 후 플라스틱으로 배출
서류봉투(갈색)	종이류로 배출
성냥	물에 적신 후 배출
소화기	대형폐기물로 배출
솜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솜이불	대형폐기물로 배출
송곳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수건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수세미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수첩	종이류, 걸지는 재질에 맞게 배출
숯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스캐너	동행정복지센터 무료수거함으로 배출
스키용구류	대형폐기물로 배출
스티커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스티커 뒷면 종이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스폰지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스프레이 / 부탄가스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캔류로 배출
슬리퍼(고무)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로 배출, 건전지는 제거
식물 / 나무	황색봉투로 배출
식용유용기(플라스틱)	모두 사용 후 플라스틱으로 배출
신문지	한데 묶어서 종이류로 배출
신발	가족,천 소재는 의류수거함, 그 외는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쌀포대	종이류 또는 재질에 맞게 배출
쓰레받기(철)	고철로 배출
쓰레받기(플라스틱)	플라스틱으로 배출



○ 품목	배출방법
아기욕조 / 아기침대	대형폐기물로 배출
아령	고철류 또는 재질에 맞게 배출
아이스박스	대형폐기물로 배출
아이스팩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걸비닐은 비닐류로 배출 가능
약기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로 배출 ※약기는 폐가전 제품 무상방문수거 대상품목이 아님
압력솥	고철류로 배출
양파망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애완동물 용변 시트	대형폐기물로 배출
액자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앨범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야구공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야구글러브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야구배트(나무)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야구배트(알루미늄)	고철류로 배출
약 종류	약국, 보건소 등의 전용수거함으로 배출
양초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양파망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에어매트	대형폐기물로 배출
엔진오일	전문처리시설(카센터 등)로 배출
여행가방(캐리어)	대형폐기물로 배출
역기	고철로 배출
연필, 색연필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연필깎이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오렌지껍질	음식물류폐기물로 배출
옷걸이 (세탁소 흰색 철사)	고철로 배출
옷걸이 (플라스틱+금속)	재질별 분리가 어렵다면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와이퍼	고무 등 제거하여 고철로 배출
요가매트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우산	재질별 분리가 어렵다면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우유팩	종이팩으로 배출
유리병	유리병류로 배출
유리병 뚜껑 (철 / 알루미늄)	고철로 배출
유리판	황색봉투에 담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로 배출
유모차	대형폐기물로 배출
의류	의류수거함으로 배출
의류건조대	고철류, 플라스틱류 등 재질에 맞게 배출
의자	대형폐기물로 배출
이불	솜 없는 것은 의류수거함, 솜 있는 것은 대형폐기물로 배출
인형류	황색 봉투로 배출

가	품목	배출방법
	자석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자전거	대형폐기물로 배출
	잡지	종이류로 배출
	장갑류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장난감류	여러 재질이 섞인 경우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장판	대형폐기물로 배출
	전기장판 (전기이불담요)	대형폐기물로 배출
	전기코드류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전단지	종이류로 배출
	전동칫솔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전화번호부	종이류로 배출
	접착제(본드 등)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젓꼭지(아기용품)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조각칼	수거원이 다치지 않도록 싸서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종이상자	종이류로 배출
종이심	종이류로 배출
종이조각	종이류로 배출
주전자 (철 / 알루미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돌려서 제거한 후 고철류로 배출
지우개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大	품목	배출방법
	차 찌꺼기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찾잔(도자기류)	PP마대로 배출
	책	종이류로 배출
	천막	천만 황색봉투로 배출
	철사	고철로 배출
	철판(가정요리용)	고철로 배출
	축구공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치약용기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크기가 작아 선별이 어려움)
	치킨박스	종이류로 배출, 기름 오염된 종이는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침구류 (이불 / 베개 등)	의류수거함(솜 없는 경우) 또는 대형폐기물(솜 있는 경우)로 처리
	칫솔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ㄱ	품목	배출방법
	카펫 / 용단	대형폐기물로 배출
	커튼	의류수거함으로 배출
	커튼레일 / 커튼봉	대형폐기물로 배출
	커피원두 찌꺼기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케첩용기	물로 헹군 후 플라스틱으로 배출
	코르크마개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코팅된 종이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콘센트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콘택트렌즈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쿠션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로 처리
	크레용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키보드	동행정복지센터 무료수거함으로 배출

ㄴ	품목	배출방법
	타이어	구입처와 상담 후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탁상달력	이물질 제거 후 종이류로 배출
	텐트	대형폐기물로 배출
	톱	고철류로 배출
	틀니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티백(녹차)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ㄷ	품목	배출방법
	파쇄지(세절지)	밀봉하여 종이류로 배출
	파인애플껍질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페트병	플라스틱으로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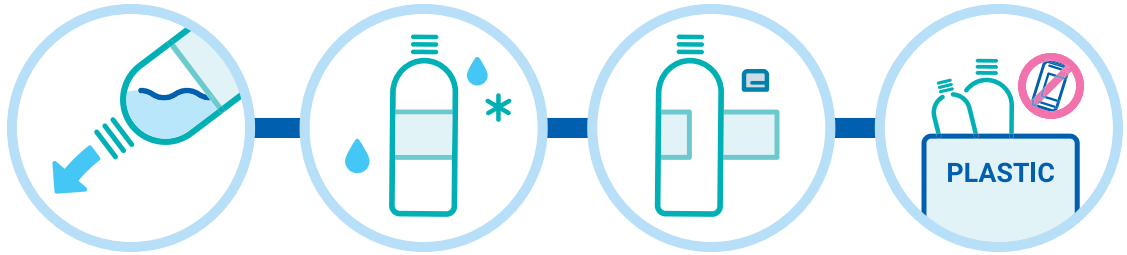


포스터 / 포장지	코팅됐으면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프링글스(감자칩) 용기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피자박스	이물질이 묻었으면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필름(사진용)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ㅎ	품목	배출방법
	햇팩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항아리	대형 폐기물로 배출
	형겉류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헤드폰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헬멧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현수막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형광등	전용수거함으로 배출, 주택은 동행정복지센터로 배출
	호스류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호일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화분	대형 폐기물로 배출
	후라이팬	고철로 배출
	휴대용 플레이어 (mp3 등)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휴대전화	동행정복지센터 무료수거함으로 배출

A-Z	품목	배출방법
	CD/DVD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CD 케이스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PVC류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분리배출, 이것만 기억하세요!



비운다
용기안의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배출합니다.

행군다
재활용품에 묻어있는 이물질, 음식물 등은 닦거나 헹구어서 배출합니다.

분리한다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은 별도 제거 후 배출합니다.

섞지않는다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하여 배출합니다.

1회용품 관련 문의	구청 담당자	880-4357
재활용품 관련 문의	구청 담당자	880-4354
음식물 쓰레기 관련 문의	구청 담당자	880-4368, 4367
대형폐기물 관련 문의	구청 담당자	880-4362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동행정복지센터 청소담당자	
황색봉투/PP마대 수거	동아ENT	874-2077~88
대형폐기물 수거	삼원환경	820-7317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 안내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891-6091(내선:2)

※ 일부 재활용 품목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환경부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자의 내용은 2020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미추홀구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다운로드 방법: [미추홀구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생활]-[청소/재활용]-[재활용품]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주민용